

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38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8년 12월 17일

제안자 : 환경수자원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저공해 자동차의 표지 규격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상위법 근거가 달라 이를 수정하고, 시장이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통행요금 감면의 경우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다른 조례에서 기 감면되고 있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.

2. 주요 골자

-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의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5조를 따르도록 함(안 제6조제2항)
- 실효성이 낮은 유료도로의 통행요금 감면 대신 기 시행하고 있는 전자태그 부착 차량의 혼잡통행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제5항제2호)
- 시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 주차요금, 혼잡통행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(안 제6조제6항 신설)

3. 참고사항 : 생략

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6조제2항 중 “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5조 또는 「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38조 또는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제79조의7에”를 “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5조에”로 한다.

안 제6조제5항제2호 중 “시장이 관리하는 유료도로 통행요금 전부 또는 일부 감면”을 “혼잡통행료(전자태그 부착 자동차에 한함)”으로 한다.

안 제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⑥ 제5항제1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, 제5항제2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6조(운행에 대한 지원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「<u>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</u>」에 따른다</p> <p>③ ~ ④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〈신 설〉</p>	<p>제6조(운행에 대한 지원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「<u>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</u>」 제5조 또는 「<u>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</u>」 제38조 또는 「<u>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</u>」 제79조의7에 따른다.</p> <p>③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 <p>1. <u>시장이 운영하는 공영 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 주차요금 전부 또는 일부 감면</u></p> <p>2. <u>시장이 관리하는 유료 도로 통행요금 전부 또는 일부 감면</u></p> <p>3. <u>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〈신 설〉</p>	<p>제6조(운행에 대한 지원)</p> <p>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「<u>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</u>」 제5조에 따른다.</p> <p>③ ~ ④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 <p>1. <u>시장이 운영하는 공영 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 주차요금 전부 또는 일부 감면</u></p> <p>2. <u>혼잡통행료(전자태그 부착 자동차에 한함)</u></p> <p>3. <u>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</p> <p>⑥ <u>제5항제1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, 제5항제2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u></p>

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에”를 “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5조에”로 한다.

제6조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시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 주차요금 전부 또는 일부 감면
2. 혼잡통행료(전자태그 부착 자동차에 한함)
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⑥ 제5항제1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, 제5항제2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운행에 대한 지원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「<u>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</u>」에 따른다</p> <p>③ ~ ④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〈신 설〉</p>	<p>제6조(운행에 대한 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「<u>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</u>」 제5조에 -----.</p> <p>③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<u>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시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 주차요금 전부 또는 일부 감면</u> 2. <u>혼잡통행료(전자태그 부착 자동차에 한함)</u> 3. <u>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 <p>⑥ 제5항제1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<u>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</u>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, 제5항제2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<u>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</u>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
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〈신 설〉</p>	<p>⑥ 제5항제1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<u>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</u>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, 제5항제2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<u>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</u>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